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표** (제3조제1항 관련)

종류		기준점수
1. 토플 (TOEFL)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 및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PBT 560점 이상
		CBT 220점 이상
		IBT 83점 이상
2. 토익 (TOEIC)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775점 이상
3. 지텔프 (G-TELP)	미국의 ITSC(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Level 2의 77점 이상
4.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700점 이상 (2018. 5. 12. 전에 실시된 시험)
		385점 이상 (2018. 5. 12. 이후에 실시된 시험)
5.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700점 이상
6. 아이엘츠 (IELTS)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5점 이상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는 제1차 시험 시행일 전까지 그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공고

한다.